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4335, 2022다4342(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4335, 2022다4342(병합)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6나3014, 30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울, 이영대, 이보미, 김희성, 설재웅

피고, 피상고인C

판결 선고2023. 4. 27.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6나3014, 3021(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N

이 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AA, AB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3. 21. AC에게 분할 전 D 임야에서 분할된 일부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날 AC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모두 2013. 4. 15.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내려졌다.

라. 망인의 부 AL은 2013. 5. 23. 사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분할 전 D 임야는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당시 생존하였던 망인의 직계존속인 망 AL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상속분은 3/5이 되므로,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망인이 원고들과 체결한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각 부담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하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라 한다) 중 피고의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자녀들 중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망인의 직계존속인 망 AL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전부를 상속하게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망 AL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피고가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심대법관 오석준